

| | |
|--------------|----------------------|
| 의안번호 | 제 317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12년 월 일 (제309회) |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 |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 제출연월일 | 2012년 4월 26일 |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

| | |
|----------|-------|
| 의안 번호 | 제317호 |
|----------|-------|

제출연월일 : 2012년 4월 26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청주시와 청원군 양지역이 행정구역 통합에 합의하고 통합을 위하여 청주시는 지방의회의결 결정에 대한 건의, 청원군은 주민투표 실시 건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 주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청주시, 청원군에서 건의한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함

2. 구하고자 하는 도의회 의견

-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의견
- 청주시·청원군 통합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의견

3. 관계 법령 발췌 : 붙임

4. 기타 참고자료

- 청주시·청주시의회, 청원군·청원군의회 의견 주요내용
- 청주시, 청원군 건의문서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 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조(관계 지방의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한다.

□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구역변경,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주시·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청주시 · 청원군 의견

□ 청주시

-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 2012. 4. 19(목) 통합결정 방법에 대한 청주시의 의견수렴결과 청주시는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하고자 건의함

□ 청주시의회

-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방법에 대하여 청주시의회에서는 2012년 4월 19일(목) 11:30~12:00까지 청주시의회 특별 위원회실에서 실시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의회의결”로 결정키로 의견 수렴되었음을 통보함

□ 청원군

- 청원군과 청주시는 전국 X축 사통팔달의 교통망, 미래 첨단 산업의 거점지, 세종시의 배후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 전국 최고의 성장 가능지역으로 역사, 행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도시계획 등 많은 분야에서 상호 공존하는 만큼 청원·청주의 백년대계를 위하여는 그 어느때 보다 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청원·청주 양 지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통합의 기본원칙아래 상생발전방안 합의가 완료됨에 따라 민·관·정 각 계 각층에서 제시된 의견을 첨부하여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함

□ 청원군의회

- 지역 역사성, 주민 생활권, 행정 효율성,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청원·청주 통합의 기본원칙 속에 지역과 주민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진정성과 실행의지를 담은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원·청주 통합 군민협의회와 시민협의회가 건의한 5개분야 39개항 75개 사업 합의결과를 존중하며,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 주도형 축제속의 청원·청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건에 대하여,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 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 ① 청원군민·청주시민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는 상생발전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가 되어야 함
 - ② 청원·청주 양 자치단체는 위 합의사항을 서로 존중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함
 - ③ 5개분야 39개항 75개사업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법이 2012년12월31일 전까지 제정되어야 함
 - ④ 주민투표 실시전 통합의 장·단점과 75개 합의사항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⑤ 주민의 생활여건이 향상되고 주민의 대다수가 공감하는 주민투표가 되어야 함